

오는 10월1일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과 3백인 미만 사업장중 금융·보험업종의 법정 기준노동시간이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는 지난해 3월29일 근로기준법 개정시,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자본주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3백인 이상 사업장 및 3백인 미만 사업장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장은 90년 10월1일부터, 3백인 미만 사업장은 91년 10월1일부터 주 44시간제를 실시하고 그 이전까지는 주 46시간제를 실시한다는 입법 내용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은 주당 30시간대

그런데 주당 기준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2시간분의 임금을 놓고 감액지급 내지 복지수당 등으로 보충하자는 자본쪽과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노동자쪽의 주장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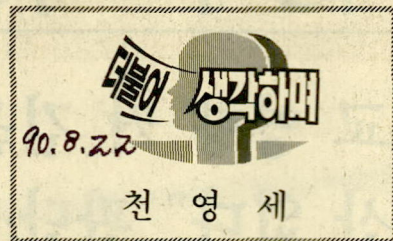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주당 30시간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후진국이라는 나라들도 45시간 안팎인데 반해 올림픽 개최국이자 세계 10대 무역국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89년 현재 50.7시간(제조업 전체)이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속에서 만성적인 피로와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피땀을 흘려온 것이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해준다는 뜻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두가지 요인, 곧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긴 법정 기준노동시간과 법정 기준노동시간만 일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가운데 단계적이나마 법정 기준노동시간이 단축되게 되었다는 것은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비용부담 축소에만 골몰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와 자본쪽은



호도당하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취지는 외면한 채 이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어떻게 줄일까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자본쪽은 파렴치하게도 "주당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된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통상임금에서 2시간분의 임금을 줄여 지급해야 한다"고 나섰다. 그러다가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서 "통상임금은 2시간분만큼 줄여 지급하되 복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이를 보충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핵심을 흐리려 하고 있다. 어떻게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를 줄이고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의 인상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법정 기준노동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될 때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간의 자율결정 사항'이라며 노사간의 싸움을 부추겼던 노동부는 "기

존의 임금수준은 보전되어야 하나 임금보전 방법은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 상여금, 기타 후생복지비 등의 인상을 꾀하는 방법을 활용하라"고 말함으로써 자본쪽의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몇푼 돈이나 먹고...' 발상

그러나 '노동시간의 단축이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이나 노동시간 단축시 기존임금을 보전해 왔던 국내외적인 관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그만큼 임금이 깎인다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연장근로수당이 몇푼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올 뿐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만

큼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자의 생활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와 자본쪽은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서는 안되고 단축되지도 않을 것(그 이유는 저임금과 강제적인 잔업강요 때문이다)이라는 전제 아래 감액시에 2.2%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고 애써 강조하면서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복지수당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잘못된 현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을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몇푼의 돈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기가 막힌 발상인 것이다.

통상임금이 아닌 복지수당 명목의 지급을 노동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익이 적어진대거나 그렇지 않아도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임금체계를 더욱더 왜곡시킨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취지를 호도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노협 상임지도위원>